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29
----------	--------

제안년월일 : 2022년 12월 21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공정무역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시의원을 삭제하면서 주민대표기관인 시의원의 시정참여 기회를 박탈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 구성에 시의원을 포함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공정무역위원회 위원 구성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을 추가함(안 제10조제3항).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0조제3항 중 “공정무역 관련 단체 및” 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정무역 관련 단체 및” 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10조(공정무역위원회 구성 등) ① 시장은 공정무역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정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p> <p>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동위원장은 행정1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이 된다.</p> <p>③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서울특별시 관계부서 실·국장 1인, 공정무역 관련 단체, 관련 전문가 등 공정무역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p> <p>⑤ (생략)</p>	<p>제10조(공정무역위원회 구성 등) ① ----- ----- ----- ---- 구성할 수 있다.</p> <p>② ----- 위원장 1명----- -----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 호선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구성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 공정무역 관련 단체 및 ----- ----- ----- ----- 위촉한다.</p> <p>④ 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하고, 위원의 임기는 회의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p> <p>⑤ (현행과 같음)</p>	<p>제10조(공정무역위원회 구성 등)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개정안과 같음)</p> <p>③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정무역 관련 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 공정무역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p>④ (개정안과 같음)</p> <p>⑤ (현행과 같음)</p>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10조의 공정무역위원회에”를 “지원 등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정무역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동위원장 2명”을 “위원장 1명”으로, “이내로 구성하되, 공동위원장은 행정1부시장과 위촉직”을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으로, “선출하는 1명이 된다”를 “호선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구성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서울특별시 관계부서 실·국장 1인, 공정무역 관련 단체”를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서울특별시 관계부서 실·국장 1인, 공정무역 관련 단체 및”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하고, 위원의 임기는 회의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신청 및 접수 등) ①·② (생략)</p> <p>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u>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10조의 공정무역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한다.</u></p> <p>④ 시장은 제3항의 <u>공정무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단체를 선정하는 경우 이를 해당 공정무역단체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u></p> <p>제10조(공정무역위원회 구성 등) ① 시장은 <u>공정무역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정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u></p> <p>② 위원회는 <u>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동위원장은 행정1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이 된다.</u></p> <p>③ 위원은 <u>서울특별시의회의원, 서울특별시 관계부서 실·국장 1인, 공정무역 관련 단체, 관련 전문가 등 공정무역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u></p> <p>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u>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u></p> <p>⑤ (생략)</p> <p>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p> <p>1. 2. (생략)</p> <p>3. <u>공정무역 지원단체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심의</u></p>	<p>제9조(신청 및 접수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지원 등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u>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u>-----.</p> <p>④ ----- <u>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u>-----.</p> <p>제10조(공정무역위원회 구성 등) ① ----- ----- ----- <u>구성할 수 있다.</u></p> <p>② ----- <u>위원장 1명</u>----- ----- <u>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u> ----- -- <u>호선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구성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u></p> <p>③ ----- <u>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정무역 관련 단체 및</u> ----- ----- ----- <u>위촉한다.</u></p> <p>④ <u>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하고, 위원의 임기는 회의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u></p> <p>⑤ (현행과 같음)</p> <p>제11조(위원회의 기능) ----- -----.</p> <p>1. 2. (현행과 같음)</p> <p><삭 제></p>

4.·5. (생 략)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 ④ (생 략)

4.·5. (현행과 같음)

제12조(회의 등) <삭 제>

② ~ ④ (현행과 같음)